

13.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1999-393호 1999. 12. 17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음구조”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차음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차음성능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이하 “차음성능시험”이

라 한다)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제조 및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급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제품의 공급·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차음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성능기준)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

조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차음구조의 인정신청) ①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 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는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또는 사용자로 하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차음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현장에 대해 차음구조 공사착공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차음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3의 차음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원장은 차음구조 인정업무 수행상 제시 협의의 실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확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차음구조의 원재료, 배합비,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차음구조의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청자의 제조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차음성능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는 한국산업규격 KS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 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출한 차음구조의 전문시공자 가운데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고 신청자와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시험) ①원장은 신청된 구조의 차

음성능시험을 한국산업규격 KS F 2808(시험실에서 음향투과손실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시험기관(이하 “품질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 의뢰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시험체 제작 개시 이전에 공사방법을 검토하여 시험체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원장이 통보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시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원장소속의 직원이 품질시험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된 차음구조의 품질시험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된 차음구조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②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서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의 통보)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단체에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
2. 차음구조의 인정서(별지제2호서식)
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

제11조(인정의 표시)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차음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인정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차음구조의 관리

제12조(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정 차음구조의 변경 등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없다.

1.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내용의 변경

제13조(차음성능시험성적서의 제출)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당해 5년이 종료되기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차음성능시험성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

장에서 인정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음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자 및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차음구조를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 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업자는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공급업자인 경우, 차음구조의 공급·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검사
2. 제품의 공급 및 판매기록
3. 제품공급처와 시공자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업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차음구조의 실적제출) 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인정된 차음구조의 시공, 판매 및 생산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장 및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의 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차음성능에 문제로 민원 요청이 있는 경우
3. 인정당시와 상이한 구조로 시공되어 민원 요청이 있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

축물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차음구조의 신청 반려 및 인정의 개선

제17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하고,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차음구조의 개선요청) 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차음구조 인정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음구조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받은 내용대로 차음성능이 확보되

지 아니한 경우

2. 차음구조의 이정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제5장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제20조(업무처리지침) ①원장은 차음구조 인정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따라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서식, 인력, 수수료 및 인력편성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명시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 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의 시행 전에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차음구조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구조로 지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처리지침의 제정) 원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차음구조 성능기준

중심주파수(Hz)	음향투과손실(dB)
125	30
500	45
2,000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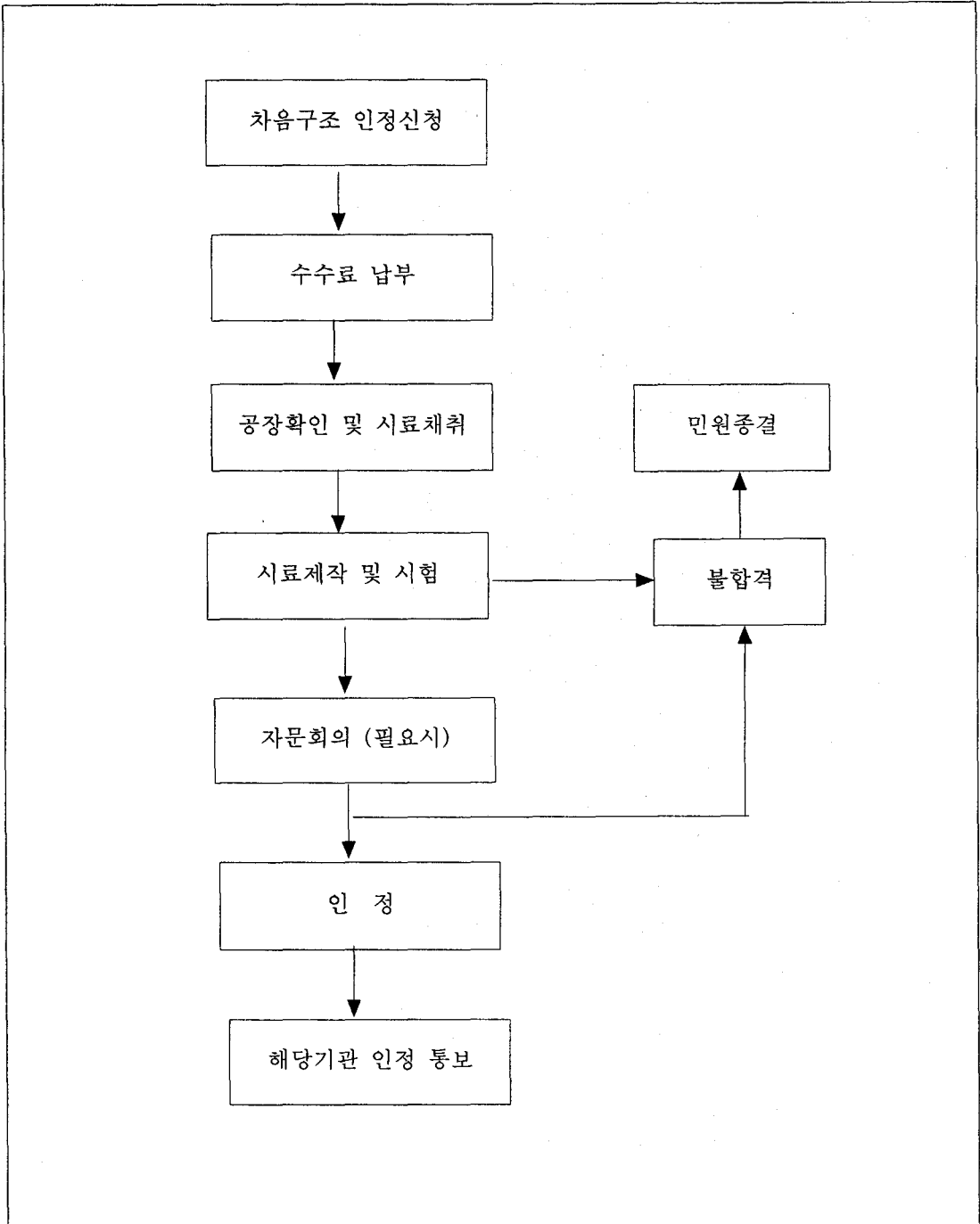
[별표 2]

인정신청 시 첨부도서

신청도서	기 재 사 항
1. 차음구조 설계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재료명 등) · 재료설명서(구성재료의 재질, 성능 등) · 시방서(시공방법 등) ·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신청자의 영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의 연혁 및 실적 · 제조시설 <input type="checkbox"/> 사용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시공자 · 건축물에 대한 개요 (위치, 연면적, 구조, 용도, 공사기간 등) · 확보된 구조 및 재료의 양
3. 품질관리 설명서 (사용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구조 및 재료의 품질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 자체 시험설비 · 품질관리 조직(인력포함) · 공장 품질 검사기준 · 현장시공 검사기준 <input type="checkbox"/> 작업표준 등 사내 규격
4. 기타자료 (사용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물성시험성적서 ·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 · 기타 필요한 사항 · 차음구조 전문시공협력업체 리스트
5. 시공건축물 개요 (사용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용도 · 층수 및 연면적 · 구조 · 차음구조 공사물량

[별표 3]

차음구조 인정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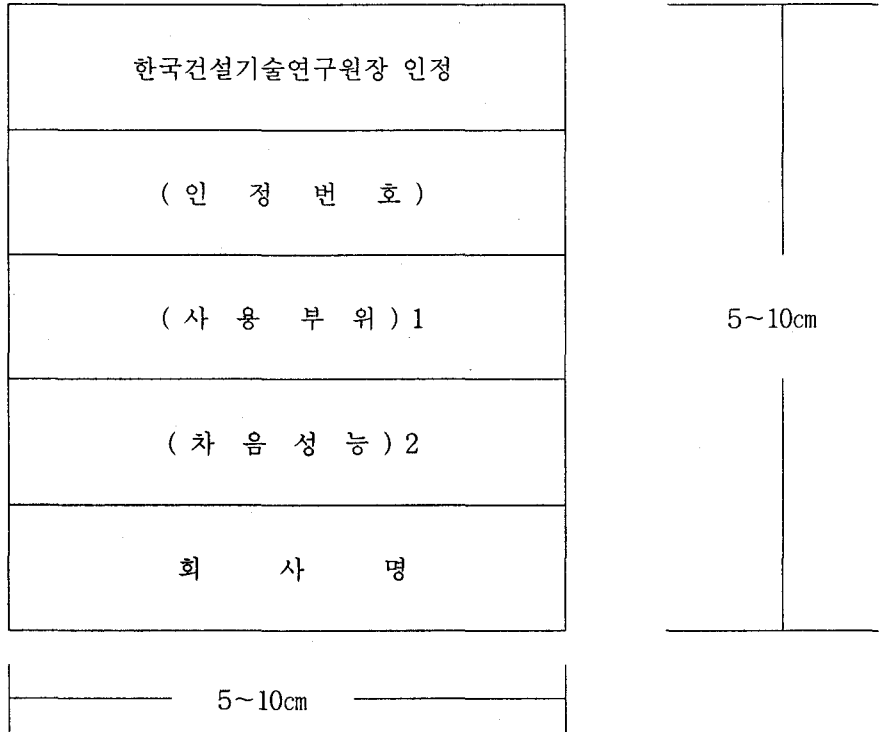
[별표 4]

차음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순번	업무명	처리기간	처 리 내 용	비 고
1	서류접수	3일	· 차음구조인정 신청서류 접수후 수수료 통보	신청인이보류하고 있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2	서류검토 및 수수료 납부 통보		· 인정신청 시 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차음구조 설계도서 -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 시방서(시공방법 등), 시공관리 2. 신청자의 영업개요 3. 품질관리 설명서	
3	수수료 납부	-	· 지정은행에 수수료 납부	처리기간에 산입 되지 않음
4	공장 품질 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6일	·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계획 수립 1. 공장품질관리 확인 - 신청자의 시설 - 구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조의 시공에 관한 사항 2. 시료채취 - 신청된 구조의 배합비등 확인 - 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 품질시험기관에 시료전달 · 확인결과 정리 및 보고	공장 품질 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은 4일 이내로 한다
5	시료제작 및 시험실시	-	· 시료제작 및 시험실시	처리기간에 산입 되지 않음
6	자문회의 (필요시)	10일	· 차음구조 인정을 위한 자문회의 - 회의자료준비 - 자문위원 선정 및 참석여부확인 - 자문위원 수당 산출통보 -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자문회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7	인정통보 및 수수료정산	6일	· 수수료 정산 · 인정공고 - 공고(안) 및 인정세부내용 작성 - 해당기관 통보 - 신청업체에 차음구조 인정서 발급	
	계	25일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5일

[별표 5]

인정·차음구조의 표시



※ 비고. 1

- 사용부위는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부분 및 바탕재 등을 표시한다.

※ 비고. 2

- 위 표시는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차음구조 인정서

1. 인정번호 :
2. 상품명 :
3. 사용부위 :
4. 차음구조내용 :

5. 인정업체 :
6. 공장소재지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차음구조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주택회보